성주군성산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폐지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폐지이유

성주군성산청소년수련원 시설이 노후되고 이용률이 저조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수보다는 폐쇄가 경제적이고 「성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」및「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시행규칙」에 따라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 되었으므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현행 조례 폐지

4. 관련사항

○ 주민생활지원과-14044(2011.04.11) 성주군 성산청소년 수련원 관리전환 계획

5. 검토의견

○ 제출자, 폐지이유, 주요내용, 관련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.

○ 현재 성산청소년수련원이 시설이 낡고 노후하여 리모델링이나 개축이 필요한 상태이나 현재 시점에서 많은 사업비를 들여 개보수를 하여도 이용률제고에 어려움이 있으며 건축분야 정부합동점검에서 C등급 이하로 평가받아 광범위한 보수 후 사용을 권고 받았고 그동안 우리군에 청소년시설이 전무하여 본 시설기능을 유지시켜 왔으나 금년부터 착수한 청소년문화의 집이 2012년에는 준공·운영됨에 따라 본 시설물을 운영하지 않기로 하여 용도폐지 하였음으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○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